

2024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 일시 ·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

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(시험의 공고)에 따라, 2024년도 외교관 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의 일시 · 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4일

인사혁신처장

1 응시대상

- 응시대상: 2024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합격자 전원 및 제1차 시험 면제자 중 원서접수한 자

2 시험 일시 및 장소

가. 시험 일시: 2024. 6. 28.(금) ~ 7. 2.(화) * 6. 30.(일) 제외

- 1교시 10:00~12:00, 2교시 14:00~16:00

나. 시험 장소

- 성균관대학교(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-2)

※ 세부 시험일정·장소는 2024. 4. 25.(목),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 예정

【일반사항】

- 가. 시험 당일 **오전 09:30까지(2교시 13:30까지)** 해당 시험실의 **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.** (08:00 이후 시험실 개방)
※ 7.2.(화)은 2교시 시험만 있으므로 12:00 이후 시험실 개방
※ 시험감독관의 허락 없이 시험실을 무단이탈(응시자 안내시간 중에 화장실, 복도 등에서 책을 보는 행위 등)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나. 시험 전일까지 **시험장소, 교통편,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**(단, 시험 전일에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)
- 다. **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,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습니다.**
- 라. **응시자 본인에게 지정된 시험일,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.**
- 마. 시험 기간 중 본인의 응시과목에 **결시한 응시자는 그 시간 이후의 시험과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**
- 바.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**신분증을 소지해야 합니다.**
- 응시표 출력방법: 사이버국가고시센터[www.gosi.kr] → 마이페이지 → 원서접수 내역 → 응시표 출력
 - 신분증: **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, 국가보훈등록증 중 하나**
- ※ 공무원증, 학생증, 자격수첩,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**신분증 미지참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**
- 사. 시험시간 중 **통신, 계산 및 검색 기능이 있는 일체의 전자기기**(휴대전화, 태블릿PC, 스마트워치, 이어폰, 스마트밴드, 전자담배, 전자계산기, 전자사전, 디지털카메라, 동영상·음악 재생장치 등)를 **소지할 수 없습니다.**

아.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
- 각 시험실에는 시계를 별도 제공하지 않으므로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하시기 바라며, 시험감독관의 시험종료시간 예고 고지나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더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시험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통신, 계산 또는 검색이 가능한 시계(스마트워치, 스마트밴드 등)는 사용이 불가합니다.

자. 시험시간 중 화장실 사용 후 재입실이 가능합니다.

- 교시별 지정된 시간 중 1회에 한하여 지정된 화장실만 사용 가능하며, 사용 전·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소지품 검사, 대기시간 등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은 시험 시간에 포함되므로 시험시간 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지정시간 이외에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교시별 2회 이상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입실이 불가하므로 당해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해야 합니다.(다음 교시 시험 응시는 가능)

※ 세부사항은 '[불입1]시험 중 화장실 사용 유의사항 안내'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- '시험시간 연장' 편의제공 대상자의 경우 교시별 지정된 시간 중, 횟수 제한 없이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.
- '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' 편의제공 대상자의 경우 시험시간 중 시간, 횟수 제한 없이 화장실 사용이 가능합니다.

차. 시험시간 중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, 타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위(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, 멀티펜 등 필기구로 인한 똑딱소리, 반복적인 헛기침 등)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시험장 내에서 흡연할 수 있으며,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.

카. 시험장 주변의 식당 사정이 여의치 않을 수 있으니 1·2교시 연속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점심식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타.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있으며,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【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】

- 가. 답안지는 표지와 초안작성용지 1매를 포함한 총 9매이며, 답안 작성 부분은 총 10쪽입니다.
- 나. 답안지에는 문제지에 인쇄된 문제의 순서에 맞게 문제번호를 적고 답안을 가로쓰기로 작성하여야 하며, 문제는 옮겨 적지 않아도 무방합니다.
- 다. 답안은 답안작성란 안쪽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, 답안작성란 이외의 바깥쪽 여백, 답안지 표지 및 뒷면 여백, 초안작성용지 등에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채점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답안과는 무관한 내용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(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7호 참조)
- 라. 답안지에는 통상적인 농도와 굵기의 **흑색** 또는 **청색** 필기구(사인펜이나 연필 종류 등은 사용할 수 없음)를 사용하되 **색상, 굵기 등이 동일한 필기구만을 계속하여 사용**하여야 합니다.
- ※ 지나치게 굵기가 가늘거나 농도가 흐린 펜 등은 사본답안지의 가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필기구 선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마. 답안을 정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**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거나, 수정할 부분을 두 줄로 긋고 그 다음부터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.**(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)
- ※ 수정테이프 사용 시 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하며,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

【부정행위 등 금지】

가.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~7호 위반행위

■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

-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-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-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
-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- 병역, 가점,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나.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~4호 위반행위

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

-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- **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(초안작성용지 포함)**
-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-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
 - **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**
 -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는 행위
 - **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물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**
 -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
 -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
 - 타 시험장에서 응시하는 행위
 -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**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 등을 따르지 않는 행위**

다. 특히 **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** 당해 시험을 **무효처리할 예정**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초안작성용지,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모든 기재사항은 시험시간 내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합니다.

라. 응시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앞면 또는 뒷면에 인쇄되었거나 메모된 응시표를 시험시간 중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될 수 있으며,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4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및 성적 안내

가. 제2차시험 합격자는 2024. 9. 26.(목),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 (www.gosi.kr)를 통해 발표합니다.

※ 인터넷 원서접수 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서비스(SMS)를 신청한 응시자 중 합격자에게는 별도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. 단, 통신 사정에 따라 문자 메시지가 수신되지 않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.

나. 제2차시험 성적은 다음의 기간 중 사이버국가고시센터(www.gosi.kr)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구 분	성적 확인 기간
제2차시험 불합격자	2024. 9. 26.(목) 09:00부터 1년간
제2차시험 합격자	2024. 11. 15.(금) 09:00부터 1년간

[붙임 1] 시험 중 화장실 사용 유의사항 안내

-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 -

시험 중 화장실 사용 유의사항 안내

사용 시간

사용 시간

시험시작 30분 이후 ~ 시험종료 20분 전

1교시

10:00

10:30

10:30~11:40

11:40

12:00

2교시

14:00

14:30

14:30~15:40

15:40

16:00

사용 횟수

“교시별 1회”에 한함

사용 절차

1. 시험 중 손을 들어 화장실 사용 요청

- 화장실 사용자가 있는 경우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

2. 문제지와 답안지를 뒤집은 후 감독관 안내에 따라 복도로 이동(소음주의)

3. 소지품 검사 : 양팔을 걷어올리고, 주머니를 뒤집어 감독관에게 보여줌

4. 화장실 사용 후 소지품 검사 재실시

5. 감독관 안내에 따라 시험실로 이동(혼자 이동 불가)

유의 사항

• 화장실 사용 허용 시간대 외에 화장실 사용 시 재입실 불가

- 화장실 사용 이전까지 작성한 답안지는 유효 처리

•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(이동 및 대기시간, 소지품 검사 등)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므로 시험시간 관리주의

• 소지품 검사에 비협조시 재입실 불가,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 본부에서 대기

• 시험 관련 자료 및 물품 소지, 화장실 내 시험관련 내용 기재행위 등 부정행위 금지

※ 시험 중 화장실 사용 가능 시간은 본인 좌석에서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.

- 사용가능 시간이 지나기 전에 의사표시를 한 응시자는 허용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재입실 가능

